

# 政治關係法 改正意見

(選舉・政黨・政治資金)

2002. 9. 7.

中央選舉管理委員會

## 1. 제안이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기탁금)제1항제2호,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제1호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 동조 제2항중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조 제1항제1호의 득표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기탁금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탁금액이 과다하고 반환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이유로 2001. 7. 19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동일자로 관련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오는 10월 2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앞서 기탁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기탁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기탁금을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

### 나. 기탁금의 반환요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때로 조정하도록 함.

# 차 례

I. 提出背景 .....	1
II. 作成方向 .....	2
III. 改正意見 主要內容 .....	6

## Ⅰ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

### 國家負擔에 의한 알릴 機會와 알 機會의 保障

1.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활성화 / 6
2. 정당의 정책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9

### 過多한 選舉運動 關聯費用의 大幅 縮小

1. 인력동원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의 폐지 / 10
2. 선거운동성 정치비용지출의 합리적 규제 / 11

## 選舉와 관련한 政黨活動의 合理的 規制

1. 政黨의 합당·개편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범위 제한 / 11
2. 政黨집회·당원교육의 개최 가능 시기의 조정 / 12

## 選舉費用 透明化 등 選舉制度의 實效性 確保

1. 선거비용 수입·지출시 단일계좌 및 카드 사용 의무화 / 12
2.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사유 조정 / 12

## 選舉公營制 擴大에 따른 候補者 亂立 抑制

1. 선거권자 추천제도의 강화 / 13
2. 후보자 기탁금 상향조정 / 13
3. 기탁금 반환 차등화 / 13
4. 선거비용보전 차등화 / 14

## 政治意識改善을 위한 基盤造成

1.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서의무 부여 / 14

2.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 / 15

3. 주권의식 양양을 위한 홍보방송 실시 / 15

**選舉過程에서 나타난 問題點 補完**

1. 장애인 투표편의의 보장과 공정성 확보 / 15

2. 현직의원의 후보자등록을 위한 퇴직 관련 보완 / 16

3. 선거운동방법의 조정 / 16

4.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결정방법 개선 / 17

5. 투표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 17

6. 보궐선거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 보완 / 18

**② 政黨法 ..... 19**

1. 중앙당의 조직 및 기능 축소 / 19

2. 의원총회 중심의 정당운영 / 19

3. 지구당의 구·시·군당 체제로의 전환 / 19

**③ 政治資金에 관한法律 ..... 20**

1.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강화 / 20
2. 정당의 회계처리 절차와 방법 개선 / 21
3.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정치자금조달 규모의 축소 / 22
4.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강화 / 23

#### IV. 分野別 主要骨子 ..... 25

- ①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 / 25
- ② 政黨法 / 37
- ③ 政治資金에 관한法律 / 38

#### V. 改正意見 條文對比表 ..... 43

- ①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 / 43
- ② 政黨法 / 145
- ③ 政治資金에 관한法律 / 155

# I. 提出背景

- 지난 '87년 대통령직선제를 다시 실시하게 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선거를 치러 오면서 그 때마다 선거자금에 관한 불법시비가 불거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였고, 정국불안과 정치불신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음.
- 오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현행제도의 개선없이 치르게 되는 경우 또다시 과거와 같은 선거자금에 관한 불법시비 등으로 정치불신이 심화되고 국정혼란이 되풀이 될 것이 우려됨.
-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돈이 많이 드는 선거풍토를 개선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불법적인 선거자금 시비에서 벗어나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선거와 정치에 돈이 많이 소요되는 요인을 축소하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하여 국민 누구나 그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이 긴요하다 할 것임.

- 이에 따라 우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선거풍토를 흐리게 했던 공명선거 저해요인을 차단하고 공명선거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선거·정치자금·정당사무에 관한 관리경험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임.



## Ⅱ. 作 成 方 向

### ①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국민이 염원하는 바람직한 선거상은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거대한 조직을 가동시켜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나,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관계를 활용하거나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등을 이용하여야 당선이 되는 선거가 아니라

후보자가 쌓아온 경력과 능력, 국정운영전략,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바탕으로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을 충분히 알림으로써 정견·정책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경쟁하여 떳떳하게 승리하는 선진적인 선거이므로 이를 확립하기 위하여

첫째, 대통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직접 부담하거나 선거일후에 보전해 주도록 함으로써 후보자가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견·정책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정당이 선거기간전에도 국가의 부담으로 정강·정책을 국민

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정당이 되도록 유도하고 정당본위·정책본위의 선거가 구현되도록 하며

셋째, 조직이용과 집회중심의 선거운동방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하여 선거에 돈이 많이 드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넷째,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면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의 기회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의정활동보고·후원회의 모금집회·정당의 당원집회·출판기념회·선거구민에 대한 축·부의금품 제공을 제한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정치자금 지출요인을 대폭 축소하며

다섯째,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때에는 카드·계좌입금을 의무화하는 등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법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동안 선거관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 ② 政黨法

첫째,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구조로

개선하고 정당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정당이 합법적으로 조달되는 정치자금만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정당의 정책이나 결정이 소수의 고위당직자에 의하여 결정·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사가 당론결정과정을 거쳐 국정에 반영되도록 정당을 원내중심으로 운영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질적 향상을 기하며

셋째, 지구당대표자의 선거운동조직으로 이용되거나 사당처럼 운영되고 있는 지구당 운영의 폐해를 바로 잡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면서 국회의원선거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시·군당체제로 전환하되, 3인이상의 공동대표로 운영하여 정당이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는 국민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③ 政治資金에 관한法律

첫째, 정당과 정치인들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여 정치자금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고

둘째, 정당이 정치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회계처리절차에 준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정치자금이 소수의 핵심 당직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폐단을 시정하도록 하며

셋째, 선거공영제가 확대되고 선거와 정치에 있어 돈의 지출요인을 대폭 축소 내지 폐지함에 따라 여기에 상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치자금 조달규모를 축소하도록 하고

넷째, 불법정치자금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 조사권을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대한 확인·조사권에 근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화하도록 함.

### Ⅲ. 改正意見 主要內容

#### ①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 國家負擔에 의한 알릴 機會와 알 機會의 保障

#### 1.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활성화

##### 가.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 설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 산하에 방송사·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11인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합동방송연설회, 텔레비전방송 대담·토론회 및 텔레비전방송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도록 함.

##### 나. 합동방송연설회 신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한 합동방송연설회를 3회 개최하도록 하고 공영방송사

가 그의 부담으로 생중계로 방송하도록 하되, 다른 방송사도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주관 텔레비전방송 대담·토론회 실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정견·정책 등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종전에 공영방송사의 공동주관으로 3회이상 실시하던 후보자 초청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를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이를 공영방송사로 하여금 생중계하도록 하되, 다른 방송사도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라. 합동신문광고 실시

대통령선거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정견·공약이나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유권자가 상호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정전반을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각 6회씩 중앙일간지에 합동신문광고를 실시하도록 함.

#### 마. 영화상영관광고 실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정

견·정책 홍보를 위한 30초이내의 영화상영관광고의 원판필름(1종)을 제출받아 하나의 광고필름으로 편집하여 선거운동기간중 전국의 영화상영관을 통하여 이를 상영하도록 함.

#### 바. 신문광고 횟수 증대 및 국가 지원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신문광고의 횟수를 70회에서 80회로 늘리고, 그 중 40회의 신문광고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40회의 광고비용은 선거일후 보전해 주도록 함.

#### 사. 방송광고 횟수 증대 및 국가 지원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방송광고는 1회 30초이내로 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종이내에서 100회씩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0회의 방송광고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나머지 각 50회의 광고비용은 선거일후 보전해 주도록 함.

#### 아. 방송연설에 대한 국가 지원 및 보전 확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와 연설원이 할 수 있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의 방송연설중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연설원이 행한 방송연설 비용은 선거일후 보전해 주도록 함.

## 자. 광고 게재 내용에 대한 제한

신문광고·합동신문광고·방송광고·영화상영관광고에는 다른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경력 등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하여 정책경쟁에 의한 선거풍토를 유도하도록 함.

## 2. 정당의 정책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가. 정강·정책 신문광고비용의 국가부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등에 게재할 수 있는 50회의 광고중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행하는 25회의 광고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나. 정강·정책 홍보를 위한 방송연설 확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공영방송사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1회 2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의 방송연설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함.

### 다. 텔레비전방송 정책토론회 개최 의무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소속당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정책토론회를 월 1회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공영방송사로 하여금 이를 생중계하도록 하되, 다른 방송사도 그의 부담으로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過多한 選舉運動 關聯費用의 大幅 縮小

### 1. 인력동원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의 폐지

#### 가.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의 폐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세과시를 위한 대규모 청중동원으로 선거의 과열·혼탁을 조장하고 대가성 금품제공 등 불법 비용지출의 폐해가 많은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도록 함.

#### 나. 대통령후보자의 거리연설 폐지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장장치를 이용한 거리연설을 할 수 없도록 하되, 시민단체 초청 대담·토론회, 확장장치 사용 않는 거리연설 기타 국민과의 접촉 기회는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후보자와 국민의 대면접촉 욕구를

해소하도록 함.

## 다. 대통령선거의 유급 선거사무원수 축소

지구당에 유급사무원이 있고 자원봉사활동이 제한없이 허용됨을 감안하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들 수 있는 유급선거사무원의 수를 대폭 축소하여 선거사무소에 20인이내, 시·도선거연락소에 5인이내, 구·시·군선거연락소에 2인이내로 하도록 함.

## 2. 선거운동성 정치비용지출의 합리적 규제

### 가.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의 확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확대하도록 함.

### 나. 정치인의 경조사 축·부의금품 제공 금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지구당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 배우자는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경조우편이나 전보를 발송하는 외에는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다.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저서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

## 選舉와 관련한 政黨活動의 合理的 規制

### 1. 정당의 합당·개편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범위 제한

정당의 합당·개편 및 후보자선출대회에는 투표권이 없는 일반당원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내빈까지 참석하게 함으로써 많은 개최비용이 드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당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2. 정당집회·당원교육의 개최 가능 시기의 조정

선거일전 30일부터 제한하던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을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중에도 읍·면·동별로 1회씩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확대당직자회의를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읍·면·동별로 1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

## 選舉費用 透明化 등 選舉制度의 實效性 確保

### 1. 선거비용 수입·지출시 단일계좌 및 카드 사용 의무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예금계좌를 통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비용의 지출을 신용카드 사용 또는 예금계좌입금의 방법으로 하도록 의무화함.

## 2.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사유 조정

당선인이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중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선고유예를 제외함)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하도록 함.

選舉公營制 擴大에 따른 候補者 亂立 抑制

## 1. 선거권자 추천제도의 강화

### 가. 선거권자 추천대상 후보자의 확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소속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배분대상정당이 아닌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함.

## 나. 선거권자 추천요건 변경 및 강화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권자 추천인수를 시·도별 분산없이 30만인이상 35만인이하 또는 10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1만인이상으로 한 총 10만인이상 20만인이하로 함.

## 2. 후보자 기탁금 상향조정

대통령선거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신청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하는 기탁금을 현행의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

## 3. 기탁금 반환 차등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기탁금 반환을 차등화하여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때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을 득표한 때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미만을 득표한 때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후보자에게 반환하여 주도록 하되, 100분의 2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

## 4. 선거비용보전 차등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때에는 선거비용보전액 전액을,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을 득표한 때에는 선거비용보전액의 100분의 75 해당 금액을,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미만을 득표한 때에는 선거비용보전액의 100분의 50 해당 금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되, 100분의 2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도록 함.

## 政治意識改善을 위한 基盤造成

### 1.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서의무 부여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준수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선서를 하도록 함.

### 2.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3. 주권의식 양양을 위한 홍보방송 실시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는 합동방송연설회, 텔레비전방송 대담·토론회 및 텔레비전방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연설회 또는 토론회 개시전에 국민의 주권의식을 앙양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권장하는 내용의 홍보방송을 실시하도록 함.

## 選舉過程中에서 나타난 問題點 補完

### 1. 장애인 투표편의의 보장과 공정성 확보

#### 가. 장애인의 거소투표 대상 확대와 부재자신고절차의 간소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대상이 되는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구·시·읍·면의 장이 사전에 부재자신고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며, 이를 받은 장애인은 통·리·반장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나. 장애인 수용시설의 기표소 설치 및 입회

부재자 신고를 한 장애인을 3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후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시설 안에 거소투표

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후보자가 추천하는 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함.

## 2. 현직의원의 후보자등록을 위한 퇴직 관련 보완

입후보를 위하여 퇴직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때에 궐원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3. 선거운동방법의 조정

후보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어깨띠를 두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할 수 있는 명함에 기호와 선거구명 및 소속 정당명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확성장치 이용 거리연설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 오후 10시 또는 11시부터 제한하던 것을 오후 9시부터 제한하도록 함.

## 4.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결정방법 개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



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등 지역구국회의 원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

## 5. 투표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 가. 재·보궐선거의 일요일 실시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4월과 10월의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4월과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실시하도록 함.

### 나. 초등학교의 투표소 출입 허용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제고하고 어린이의 생활교육기회를 넓혀주기 위하여 선거인이 투표소안에 데리고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어린이의 범위를 현행의 6세미만에서 초등학교이하의 어린이로 확대함.

### 다. 부재자투표절차 보완

부재자투표시 회송용 겹봉투의 봉합부분에 사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으나 군인 등의 경우 인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회 각 분야에서 서명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인날인외에

무인 또는 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6. 보궐선거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 보완

###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 제한 완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지 아니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

### 나. 재·보궐선거의 입후보 제한 강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 또는 사직하거나 퇴직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

### 다. 지방의원보궐선거 실시 확대

지방의회의 궐원된 의원이 의원정수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도 보궐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함.

## ② 政黨法

### 1. 중앙당의 조직 및 기능 축소

국가는 국회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중앙당에 대하여 국회 안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사무소 유지에 따른 정당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 2. 의원총회 중심의 정당운영

정당의 의원총회를 정당의 주요사항의 심의·의결기관화하여, 정당의 대의기관의 전속적인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외에 당해 정당의 정강·정책결정, 교섭단체대표의원 선출, 법률 제·개정에 대한 당론결정,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 기타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입장 등을 심의·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갖도록 함.

### 3. 지구당의 구·시·군당 체제로의 전환

현행 국회의원선거구단위의 지구당을 폐지하여 구·시·군당(하나의 구·시·군이 여러 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나누어져 있어도 하나의 구·시·군당만을 두게 함)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구·시·군당의 대표권은 3인이상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선거의 후보자는 구·시·군당의 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③ 政治資金에 관한法律

#### 1.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강화

##### 가. 대통령후보자 등의 정치자금관리의 일원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을 지출하려는 때에는 정치자금관리인을 신고하도록 하여 당해 정치인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후보자 등의 정치자금관리인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매년 정기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나.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예금계좌 사용의무화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하도록 하며, 정치자금관리인의 경우 1개에 한하여 예금계좌를 개설·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지출에 관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을 수입·지출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가 방지되도록 함.

#### 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신용카드등 사용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하는 경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 지로용지, 우편환, 예금계좌입금의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여 고액의 정치자금 수수시 실명제가 구현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지출시 5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은 수표 등 위의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여 지출과정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함.

#### 라.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정치자금의 납입 또는 기부에 있어서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입·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그 금액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고액기부에 대한 국민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경유착등 정치자금관련 부패가 예방되도록 함.

## 2. 정당의 회계처리 절차와 방법 개선

### 가.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절차의 엄격화

정당이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구입품의와 지급결의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회계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당에 있어서도 위의 예금계좌 이용, 일정 금액이상은 수표 사용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당의 지출과정이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나. 정당재정의 자율통제기능 강화

중앙당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의원총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재정의 민주화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분기마다 예금계좌의 잔액과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 및 그 내역을 확인·검사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당원에 의한 자율통제가 가능하도록 함.

## 3.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정치자금조달 규모의 축소

#### 가. 시·도지부와 지구당의 후원회 폐지

시·도지부와 지구당의 후원회를 폐지하여 선거분야에서 선거공영제의 확대에 따라 돈의 소요처가 줄어들고, 정당 및 후보자의 정치자금과 선거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되는 것에 대응되도록 함.

#### 나. 선거보조금 등 폐지

국고보조금중 선거 때마다 정당에 지급되던 선거보조금을 폐지하고, 후원회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평년의 연간기부한도액의 2배액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폐지하여 정치자금의 조달규모를 축소하도록 함.

#### 다. 집회에 의한 금품모집 폐지

집회에 의한 금품모금방법을 폐지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조달규모를 축소시키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이나 세과시 등 사실상 선거운동의 방편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 4.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강화

#### 가. 정치자금법 위반자의 피선거권·공무담임권 및 당직취임 제한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주거나 받은 죄 등으로 100만원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10년간 피선거권·공무담임권 및 정당의 당직취임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 나.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위법한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질문·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임의동행·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범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검찰에 고발·수사의뢰·경고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법질서 전반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함.